

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경감률 정비
 - (당초) 재산세의 100분의 50
 - (변경) 최초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, 이후 3년간 100분의 25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- 현재 구미시 관내에는 해당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즉각적인 감면 대상은 없으나, 자치법규의 공백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- 향후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조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며, 이를 통해 조례와 법령 간의 불일치로 인한 지방세 오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- 또한, 감면 대상자들이 개정된 감면율이나 기간을 오인하여 혼란을 겪거나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의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,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변경된 세제 혜택에 대한 홍보와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야 함.